

[별첨 4]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신청	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임용시험 : 2021. 2. 22.(월) ~ 2. 26.(금) - 제3회 임용시험 : 2021. 3. 29.(월) ~ 4. 5.(월) - 제4회 임용시험 : 2021. 7. 5.(월) ~ 7. 12.(월) ※ 기간 내 방문 또는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우51154) ※ 2020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 중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면제('19년도 이전 서류 제출자는 면제되지 않음)
▼	
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제출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중 시험시간 연장 편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여건상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경상남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 단, 제출했던 서류의 발급일이 해당 시험의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하며 기한 경과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52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각1부)	비고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답안지 대필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시간 연장 1.5배	없음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 시험실 배정	없음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답안지 대필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시간 연장 1.5배	없음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의사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	없음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의사진단서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없음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의사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2급 ~ 6급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 사실확인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 의사진단서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 확대답안지 : A3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 1
-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를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17.3.28.시행)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 ※ 화장실 사용 :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

참고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회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

2. 발급일자 :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2회	제3회	제4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1년 2월 24일	2021년 4월 2일	2021년 7월 9일
진단서 발급일	2019년 2월 25일 이후	2019년 4월 3일 이후	2019년 7월 10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 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 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